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1995. 12. 29.  
내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5년 12월 22일

회부일자 : 1995년 12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정기회

제7차 내부위원회(1995. 12. 26.)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제8차 내부위원회(1995. 12. 29.)번안동의에 의한 재심의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최경주)

가. 제안이유

- '96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재난관리기능 인력보강,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 '96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 정원증원 : 30명(본청 29명, 직속기관 1명)
- ▷ 재난관리기능 인력보강
  - 정원증원 : 1명(증평출장소)
- ▷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 정원감축 : 5명(본청)
- ▷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
  - 1995. 12. 31. 25명 ⇒ 1996. 12. 31. 25명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창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재난관리 기능 인력보강,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있어  
본청정원인 918명을 942명으로 24명 증원조정하고  
직속기관 정원 960명을 961명으로 함과 아울러  
출장소 정원 230명을 23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과  
부칙조항의 한시정원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과 관련 개정  
코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본 청정원에 있어서의 24명 증원은 '96년도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대상 29명이 증원되는 반면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에 따라 5명의 정원이 감축하게 됨에 기인하는 것이며  
직속기관에 있어서의 1명 증원 또한 '96년도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출장소에 있어서의 1명 증원은 재난관리 기능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조항에 한시규정으로 되어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원과 존치 시한 개정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의 시한연장과 관련하여 동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의회차원의 자치입법권을 고려치 않고 중앙정부의 지침등에 좌우되는 행정행태의 번복은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근절되어야 할 부분으로 결론짓고 본 안건에 대해서 만큼은 집행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를 용인하나  
차후 중앙정부의 지침등에 제약을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될시에는 용납할 수 없음에 의견을 같이하고 재심의 의결토록 함.

## 6. 심사결과

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하여 '96년 1월중의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해줄것을 조건으로 함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과 사업중단에 의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당초 제출안과 동일하게 도원안대로 의결(참석 8인, 찬성 8인)

## 7. 소수의견 요지

김진학 의원

『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성 강조 및 충북도민을 위하고 민선지사의 의지가 충분히 발휘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운영되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의회사무처 현원 58명을 69명으로 할것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조례 존치 기한을 '95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할 것을 제의』

##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신구 조문 대비표